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발생 의심 시 사전 점검 기술 지원〉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5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발생 의심 시 사전 점검 기술 지원(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3.

다.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발생 의심 시 사전 점검 기술 지원(안 제48조의3 제4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8조의3 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u>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홍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u>⑤ 제1항 및 제4항에</u>----- -----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제1항1)에 따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그런데,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신속한 점검과 이에 필요한 정보보호 당국의 지원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선제적인 침해 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조사나 점검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심 상황을 신고할 경우 점검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침해사고 발생이 있는 경우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인하고 조기에 침해사고에 대응하려는 것임.
- 다만, 지난 이동통신사 침해사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자는 침해사고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의심 정황에 비추어 침해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음.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처럼 현재도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신고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있는지 자체적 점검이 어렵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의심 정황에 따른 신고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 사고 은폐에 따른 편익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꺼림.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명확히 기술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안내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이라는 유인이 크지 않고, 오히려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 간주를 악용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황이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³⁾은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사업자의 신고 지연에 대한 대응이 일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회피 수단으로써 의심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침해사고 의심 신고를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법 제48조 제4항 후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28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4896호)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